

WTO/TBT 통보문은 회원국들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기술규정, 표준, 검사와 인증제도의 세 · 개정사항을 WTO사무국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WTO/TBT 제도총괄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TBT 통보문 접수, 발송 및 질의처 운영은 산업분야별로 3개 정부기관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TBT 협정에 의거 1996년 2월 공산품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WTO/TBT 공식 실의처로 지정된 이후 국내 기술 규정인 WTO 통보, 외국인 TBT 통보문의 접수 및 보급, 외국으로부터의 TBT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통보되는 각국의 공산품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에 확산 · 보급하기 위해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을 2007년 2월 2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TBT 포털사이트 Know TBT([www.knowtbt.kr](http://www.knowtbt.kr)) · TBT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문의: 기술표준원 기술규제서비스과(02-509-7254~7257), [tbt@kats.go.kr](mailto:tbt@kats.go.kr)]

**주요  
내용**

브라질 | (G/TBT/N/PRA/480)

**개인용 보호장비(충격흡수장치, 노동인부 벨트)에 관한 장관령 초안**

브라질은 '인간 건강 보호'라는 이유로 적합성 평가 절차 시스템의 요건을 결정하는 인증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제 3차 필수 인증에 따른 개인용 보호장비(PPE)의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장관령 초안을 통보했다.

유럽연합 | (G/TBT/N/EU/34)

**방향등, 다이오드형광등과 관련 기기의 에코디자인 요건에 관련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이행지침 초안(2009/125/EC)**

EU는 지구 온난화와 유럽에서 높아지는 에너지 사용에 대응하고자 방향등, 다이오드형광등과 관련 기기의 에코디자인 요건에 관련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이행지침 초안(2009/125/EC)을 마련했다. 본 지침 초안의 목적은 방향등, 다이오드형광등과 관련기기(예)의 최저 에너지 효율 소비와 기능성, 정보 요건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기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09/125/EC 지침의 체계에 따라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의 유통이 금지된다. 본 지침 초안은 전 세계의 관계자들에 의해 이행될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본 지침의 채택 예정일은 2012년 11월이며 2013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일본 | (G/TBT/N/JPN/386)

**일반 비료에 대한 공식 표준의 개정안**

일본이 일반 비료(HS: 3101, 3103, 3105)에 대한 공식 표준의 개정안을 통보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인간 건강과 안전 보호와 농산품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일반 비료에 대한 공식 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공식 표준으로는 ▲용성규산인산염(Fused silicate phosphate) ▲혼합 유기질비료(Mixed organic fertilizer) ▲복합 비료(Complex fertilizer) ▲혼합 슬러지화합물 비료(Mixed sludge compound fertilizer)이다. 또 제정되는 공식 표준은 ▲용성 슬러지 조각제 규산인산비료(Fused silicate phosphate fertilizer) ▲혼합 가축배설화합물 비료(Mixed animal waste compound fertilizer) ▲혼합 퇴비 비료(Mixed compost compound fertilizer) ▲농약을 포함한 혼합 비료(Mixed fertilizer that contains agricultural chemicals)이다. 본 개정안은 오는 6월에 채택될 예정이며 7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미국 | (C/TBT/NA/SA/690)

에어백 팽창기, 에어백 모듈, 안전띠 프리텐셔너에 관한 승인과 커뮤니케이션 요건

미국은 에어백 팽창기, 에어백 모듈, 안전띠 프리텐셔너에 관한 승인과 커뮤니케이션 요건을 통보했다. 해당 제품은 위험물질(CS 03,220, 13,300, 43,040)이다.

본 규칙안을 통해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 안전 관리소(PHMSA)는 에어백 팽창기, 에어백 모듈, 안전띠 프리텐셔너에 적용되는 위험물질 규제 개정을 제안했다. 본 개정은 규정의 두 가지 특별 허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덧붙여 PHMSA는 UN3268 에어백 팽창기, 에어백 모듈, 안전띠 프리텐셔너로 알맞게 분류되는 물질에 대한 현재의 승인과 서류 요건들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은 개정안이 채택되면 현재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 (C/TBT/NA/SA/688)

에너지절약이나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소비자 제품, 산업용기계의 불허가

미국이 에너지 절약 라벨링(CS 01,120, 13,020) 제품에 해당되는 에너지절약이나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소비자 제품, 산업용기계의 불허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특정 수입품이 해당되는 에너지 절약이나 라벨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은 CBP가 DOE나 FTC에 의해 승인됐어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CBP는 DOE와 FTC의 권고에 의해 조건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 그 제품들이 유입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CBP 규정의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CBP는 1975년의 에너지 관리 법(EPCA)과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소비자와 산업용기계에 대해 미국 서관 관할구역으로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CBP는 DOE와 FTC로부터 해당되는 EPCA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품으로 확인된 통지를 받았다면 역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DOE나 FTC의 공시에 의거하여 CBP는 즉각적인 허가 거부 대신에 조건적으로 수입국의 보세 하에 재조정, 재라벨링, 기타 다른 조치의 목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과 기계류를 유통시킬 수 있다. 즉, 해당하는 에너지절약과 라벨링 허용기준을 해당 제품과 기계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만약 해당 수입품이 적절한 시점에서 준수하지 않는다면 CBP는 DOE와 FTC의 지시 아래 수입업자에게 불허가를 통보할 수 있다. CBP 관리권으로 해당 제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 반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채택 시 해당되는 라벨링과 에너지 절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미국의 소비자제품과 산업용 기계의 불허를 EPCA의 규정 하에 실행할 수 있다.

미국 | (C/TBT/NA/SA/33/Acc)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도난 방지와 미끄럼 방지

미국 대표단은 지난 4월 9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 도난 방지와 미끄럼 방지' 기준에 대한 통보문을 발표했다. 본 통보문은 자동차의 휠체어 승강기 시스템에 대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의 개정안을 채택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준의 목적은 승강기 작동 중 부상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관리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승강기 관리·위치요건·작동요건·한계점 경고 신호·휠체어 유지 장치와 내부 바퀴 정지 검사와 공공 승강기의 요건에 대한 사항들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통보는 한계점 경고 신호의 부분으로서 수행되는 상세 절차를 명확히 하는 2005년 11월 3일의 설명을 다루고 있다. 이 통보문은 2012년 5월 7일에 발표되며, 2012년에 10월 2일부터 이행을 시작하며 선택적 준수는 2012년 5월 7일부터다.